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2372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고B

변론 종결2024. 10. 22.

판결 선고2024. 11. 26.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2023. 1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C는 원고에게 1,304,121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29098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별개의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358078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6. 29. 'C는 원고에게 3,572,446원 및 그중 1,885,104원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7. 27.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가 3/7, 자녀들인 C, E가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23. 7. 7. 접수 제47507호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각 양수금 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5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2)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인 2/7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소희

별지